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7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

발 의 자 : 박민규 · 유동수 · 이용우
윤준병 · 김한규 · 이춘석
윤후덕 · 진선미 · 정을호
김우영 · 박선원 · 서삼석
임미애 · 최혁진 · 양문석
이소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

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가액에서 비수도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금액”이라 한다)

⑤ 거주자가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수도권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주택”이라 한다)

④ (생략)

<신설>

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아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
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
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
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수도권주택 양도가액에서 비
수도권주택 취득가액(취득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
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그 납
입한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하
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
액금액”이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거주자가 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아니한다.</u> 1. <u>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u> 2. <u>주택차액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수도권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상시거주하는 경우</u> ⑥ -----제5항까지----- ----- ----- ----- -----.
---	---